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27호
2. 발 의 자 : 조규영 의원
3. 발의일자 : 2018. 1. 25.
4. 회부일자 : 2018. 1. 26.

## II . 제안이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화·지속화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실태조사 및 성과조사(매2년)’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임.

## III . 주요내용

1.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2항 신설)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안건 별첨).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25일 조규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27호로 발의되어 2018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평가방식에 있어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실태와 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라 함)사업은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및 민간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2015년에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22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혁신교육지구는 마을-학교 연계 지원사업, 청소년 자치·동아리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을 필수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2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어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혁신교육지구별로 자체평가보고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12월 12일 중간평가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sup>1)</sup>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단을 구성하여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표] 평가 점수(2016년 종합평가 기준)**

(자치구 서열화 방지를 위해 지구명을 무기명 처리함)

지구명	총점	종합평가서						사업계획서			
		평가서 합산의 60%	정량과 정성 합점 점수	정량 점수 (42점)	정성 점수 (58점)	지구 호 상 평 가 수 (20%)	중 평 가 수 (80%)	계획서 합산의 40%	정 성 점 수	지구 호 상 평 가 수 (20%)	중 평 가 수 (80%)
A	93.61	56.87	94.78	41.7	53.08	10.62	42.46	36.74	91.85	17.95	73.90
B	93.49	56.05	93.42	40.1	53.32	10.91	42.41	37.44	93.59	18.59	75.00
C	91.37	54.32	90.53	37.3	53.23	10.62	42.61	37.06	92.64	17.94	74.70
D	90.61	53.17	88.62	36.1	52.52	10.71	41.81	37.44	93.61	18.11	75.50
E	90.39	53.71	89.52	35.5	54.02	11.07	42.96	36.68	91.70	17.80	73.90
F	90.18	53.09	88.48	36.2	52.28	10.33	41.95	37.09	92.72	17.52	75.20
G	90.10	52.73	87.89	34.7	53.19	10.61	42.58	37.37	93.42	18.12	75.30
H	90.09	52.36	87.27	33.1	54.17	10.57	43.59	37.73	94.33	17.53	76.80
I	90.06	53.39	88.99	36.9	52.09	11.11	40.98	36.66	91.66	17.86	73.80
J	88.49	53.18	88.63	39.4	49.23	10.16	39.07	35.32	88.29	17.59	70.70
K	88.49	53.96	89.93	39	50.93	10.45	40.48	34.53	86.33	17.53	68.80
L	88.31	53.41	89.01	37.9	51.11	10.39	40.72	34.91	87.27	17.67	69.60
M	87.17	51.33	85.54	34.3	51.24	10.42	40.82	35.84	89.60	17.40	72.20
N	86.36	51.68	86.13	35.7	50.43	10.15	40.28	34.68	86.70	17.40	69.30
O	83.79	49.46	82.44	33.8	48.64	10.01	38.63	34.32	85.81	17.01	68.80

1) 제6조(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 마다 혁신교육지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  
 3. 혁신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4. 연차별 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  
 5. 혁신교육지구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제고와 관련된 사항

P	79.93	47.78	79.63	34	45.63	9.87	35.76	32.15	80.37	16.87	63.50
Q	79.59	46.38	77.30	29.6	47.70	9.87	37.83	33.21	83.04	17.24	65.80
R	79.52	47.86	79.77	33.4	46.37	10.07	36.30	31.65	79.14	16.64	62.50
S	79.50	46.31	77.18	33.6	43.58	10.47	33.11	33.19	82.97	17.47	65.50
T	79.14	45.95	76.58	32.7	43.88	10.36	33.52	33.20	82.99	17.29	65.70
U	80.22	0	0		0	0	0		80.22	17.00	63.22
V	79.30	0	0		0	0	0		79.30	16.96	62.33

※ U, V 지구는 2017년 신규지정임.

○ 특히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sup>2)</sup>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앙평가단과 지구 상호평가단을 구성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지표에 따라 민관학건버너스 참석률, 교육주체별 참여도, 학부모 및 교원대상 연수 실시 횟수, 혁신교육지구 구성원 만족도 등 세부영역별로 사업운영 성과를 평가한 바 있으며,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이 동 평가계획에 반영되어 실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평가 실시 여부와 그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평가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평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가방식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자칫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에 있어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17년은 자체평가기간으로 「2017~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간평가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음.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참여협력담당관-1345, 2018.2.7.).

□ 이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